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3 | 2024.02.19 (2024.02.13~02.18)**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3~02.18)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에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제11차, 2/13)” 및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제12차, 2/16)”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1차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어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였으며,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연구위해 대학 차원서 지원,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연구기관 경쟁력 높이고 행정인력 전문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제2 연구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달청>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 제도를 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4인)」,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이번 주에는 지난 뉴스Law Focus(제222호)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19(월)~2/29(목), 11일간 제413회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19(월) 본회의 개최식,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비경제, 경제). 상임위 활동, 그리고 2/29(목) 본회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2/19(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정부부처 합동) 6
- 제1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정부부처 합동) 10
-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현지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확대·강화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조달청) 19
- 「FIU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금융정보분석원) 2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24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24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5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6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국토교통부) 26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7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9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30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3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3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3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3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3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34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4인) 3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3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3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37
- 약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3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3~02.18)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ESG] 2024년 PRI 동향과 책임투자 전망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1. 일본의 기업 밸류업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지방시대위원회)	제1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 일자리-인재-생활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2024-02-13
------------------------------	--	-------------------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함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음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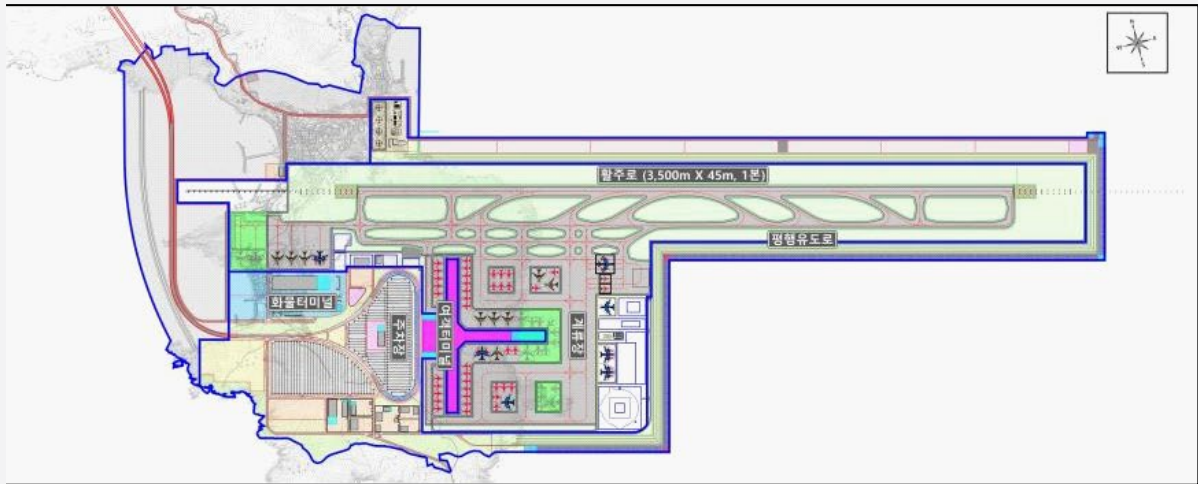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1)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① 가덕도 신공항 건설(국토부)

- 남부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하여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감
-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4월말까지 설립
-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하여,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

< 가덕도신공항 시설 배치도 및 시설규모 >



구 분	시설규모	구 분	시설규모
활주로	3,500m × 45m, 1개	접근교통	도로 연장 9.3km
유도로	평행유도로 2개, 고속탈출 6개, 직각 4개		철도 16.5Km
계류장	1,006,431㎡, 74대	주차장	10,718대
여객터미널	200,680㎡	항행안전시설	GP, LOC 및 항행시설 1식
화물터미널	17,200㎡	항공등화시설	ALS 및 공항등화시설 1식

② 부산의 국제적인 성장거점 육성,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해수부)

- 기본방향: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1단계), 비즈니스 · 상업 · 금융 중심지(2단계)
-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③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금융위)

-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은행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함
- 지역의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공기업과 신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 등 청년층에게 양질에 일자리 제공

④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행안부)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글로벌 교육·생활·문화 및 관광 환경 조성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등
- ※ 국회 발의(1월)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월 중 부처협약이 마무리될 예정

(2)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①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국토부)

-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요내용

- (개요)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융복합 거점 조성
- (재정지원) 국비 250억 및 주택도시기금 출·용자 지원
- (통합심의) 시행계획인가시 건축·도시·교통·재해·교육 등 사항 일괄심의

<사업 구상도(안)>



② 사직야구장 재건축(문체부)

- 1985년 개장된 사직야구장을 부산시에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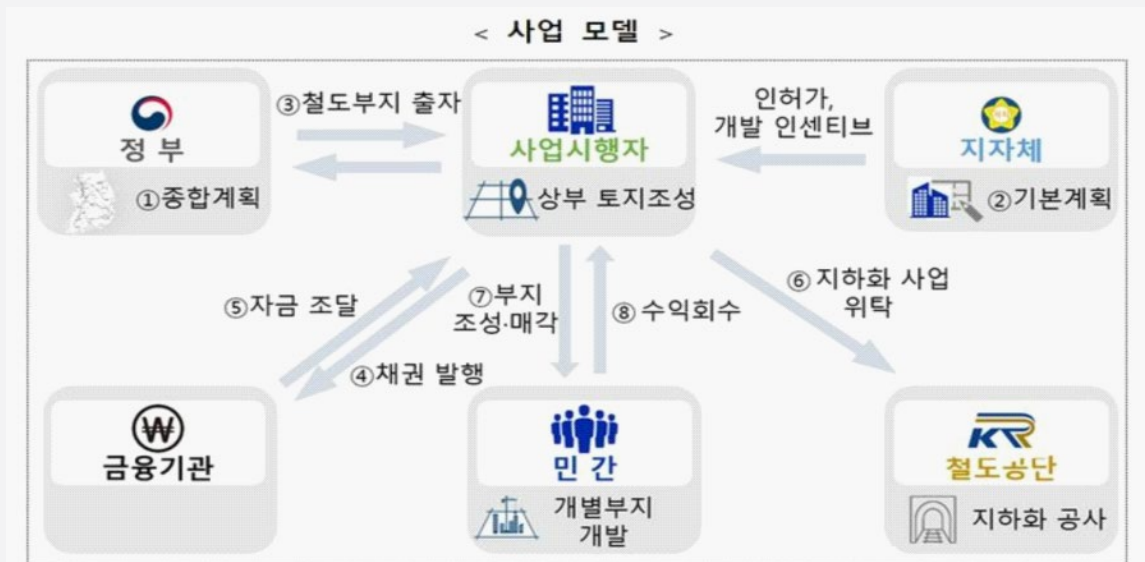
③ 어린이병원 건립(복지부)

-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병원 건립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데 이어 '23년 8월부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
- '24년 상반기 중 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24년 하반기부터 관련 행정절차 진행

-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 및 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
-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

④ 철도지하화(국토부)

- (기본방향)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여 건설비용 충당
- (종합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 (선도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선정 예정
- (협력체계) 부산을 포함한 권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부,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지하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부 개발구상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국토부)

- 부산 센텀2지구는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음
* 도시첨단산업단지 : 보상 진행 중, '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 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
-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 개발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
-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센텀2지구가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지역 경제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게 산업·주거·문화가 어울린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임

* (주거) 센텀시티, 마린시티 / (문화) BEXCO / (쇼핑) 센텀시티역 중심상권

(3) 교육 희망도시, 부산**① 시범지역 공모**

-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우선 추진
-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 추진
- 시범지역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
- 2차 지정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② 신청 현황

- 지난 2월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함
- 각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부터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선발 확대,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

③ 지역별 주요 모델

-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④ 향후 추진 계획

- 정부는 2월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
- 이후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하여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제12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제2연구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2024-02-16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하여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보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1)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지원 기반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Stipend)* 지원제도’ 마련

*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②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 확립

③ 석·박사 및 포닥 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2)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하여, 글로벌 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 마련

② 기관 간 벽 허물기로 국가적 임무 수행을 강화

-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24년 1,000억원)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 마련

③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전문성 제고 추진

-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 강화

(3)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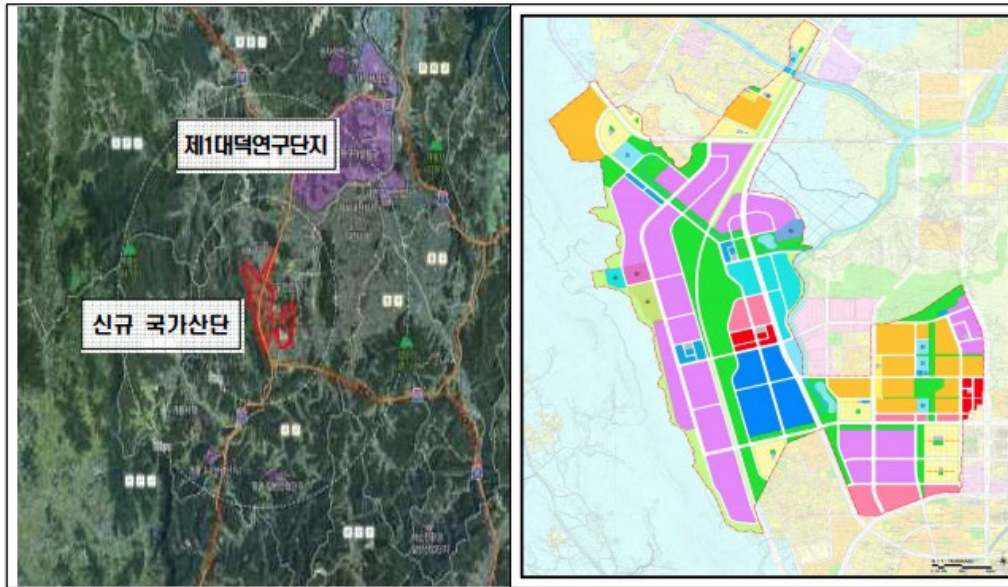
①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지자체 제안서 기준) >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지자체 제안서 기준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②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 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도입을 발표함

③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 지난 1/30일(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발주(2월초)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
-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
-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23.5월)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23.9월)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여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함

<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

비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	
4대 추진 전략	①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1. 글로벌R&D 협력기반 강화 2.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3. 세계 최고수준 R&D시스템으로 혁신	①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4.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 본격화 5. 3대 글로벌 선도기술 중점 육성 6.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①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선도 7. 인공지능 기반 경제·산업 대도약 8. 인공지능 공존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 9. 인공지능·디지털 글로벌 주도권 확보	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10. 전국민·전지역 인공지능·디지털 활용·확산 11.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12.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1)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① 글로벌R&D 협력기반 강화

- (기술선진국 협력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인력교류 사업 추진

* 글로벌R&D 정부투자 규모 : (’23) 0.5 → (’24) 1.8조원 (정부R&D총규모 대비 1.6→6.8%)

주요 글로벌R&D 프로젝트(’24년 예산)	국가	지원분야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150억원)	미국	첨단·디지털 바이오
■ 원천기술 국제협력개발(68억원)	미국, EU	반도체, 이차전지 등
■ Top-tier 연구기관 협력플랫폼 구축(100억원)	미국, 영국, 일본, EU 등	기초·전략기술, 글로벌 문제해결

- (전략지도 수립)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협력 국과 협력전략을 제안하는 분석틀 마련
- (글로벌 R&D 기반 마련) 글로벌 R&D추진의 걸림돌 개선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및 범부처 점검체계 가동

② 글로벌 선도인재 육성

- (글로벌리더 연구자 양성) 우수 연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데이터 기반 인재양성) 연구자 정보(과기정통부)와 취업자 정보(고용부) 연계, 이공계 유출입 통계 고도화 (외국인 포함)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유입에 활용
- (합리적 성과보상)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한도 상향 추진

③ 세계 최고수준 R&D 시스템으로 혁신

- (혁신도전형 R&D) 세계 최고의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R&D 사업*에 대해 예산 확대와 함께 기존 과 차별화된 제도 적용
- (R&D시스템 혁신) 선도형 R&D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국가연구기관 혁신) 정부R&D 수행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 (기업연구역량 강화) 글로벌 수준의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R&D · 인력, 장비활용 등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Top 기업연구소 지정·육성(연 10개 내외)

(2)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④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 본격화

- (양자)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단기간에 축적하는 동시에 부족한 국내 양자연구 및 상용화 기반을 대폭 확충
- (인공지능) 「AI 연구거점」 등을 통해 최고 수준 AI기술 확보
- (첨단바이오) 우리나라 첨단바이오 강점분야에서 기술 초격차 확보

⑤ 3대 글로벌 선도기술 중점 육성

- (차세대반도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선진국과 국제협력 강화
- (차세대네트워크) 6G, 오픈랜, 저궤도 위성통신 등 3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과 민관협력 강화, 표준 주도권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우주) 본격적인 국가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우주경제를 본격 가동하고, 우주탐사 및 국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기틀 정립

⑥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한계도전 R&D)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의 선제 발굴 · 육성을 위해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R&D만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 (탄소중립) R&D 단계부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탄소감축 실증 프로젝트 추진
- (미래소재) 10년 뒤 미래시장을 선도할 첨단신소재(극한환경소재, 원자단위 초박막소재 등)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3) 인공지능 · 디지털 대전환 선도

⑦ 인공지능 기반 경제·산업 대도약

- (AI · 디지털 대한민국 재설계) AI 분야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쏠산업 ·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생산성 혁명·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 제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안) 주요 방향>

- **(개요)** AI 공존시대, 저성장 · 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함께 AI로 성장 · 도약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전환 전략
- **(추진방향)** AI의 경제효과 분석, AI ·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 서비스를 발굴 · 육성하고 AI · 디지털의 효과를 생활 필수 서비스에 도입
 - 민간 역량(투자·혁신서비스 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R&D, 인력, 제도 정비 등 인프라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뒷받침
- **(핵심전략)** ①AI기반 쏠산업 혁신, ②AI융합신산업, ③국민생활속 AI, ④AI기업 양성 · 해외진출 지원

⑧ 인공지능 공존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 · 현안 선별, 사회적 공론화 집중 진행
- (AI안전 · 윤리) 국민 · 산업 · 사회가 AI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 활용환경을 보장하는 제도 체계 마련

⑨ 인공지능·디지털 글로벌 주도권 확보

- (글로벌 규범 선도) 영국과 공동으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국내 개최(5월)하고, 이를 통해 AI 역량, 디지털 규범 선도국가 위상 공고화
- (글로벌 AI · 디지털 프런티어) 가능성 있는 국내 AI · 디지털 강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별 특화 지원
- (K-디지털 확대) 신흥 · 유망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중동 · 아시아 등)하고 중동 IT 지원센터 신설(두바이) 등 해외 현지 거점 확대

(4)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인공지능 · 디지털

⑩ 전국민 · 전지역 인공지능 · 디지털 활용 · 확산

- (디지털 기반 지역혁신) AI · 디지털 허브와 지역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로 지역인재 양성 및 현안 해결
- (디지털 교육) 학교 안팎에서, 학업 · 전공 · 지역에 관계없이 AI · 디지털로 꿈을 키우고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접근·활용권 보장)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상설 운영 구조로 통합·내실화(100개소 미만)하고 에몰레이터 기반 실습 등 온라인 교육 대폭 강화
- (공공 디지털서비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 추진

⑪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 (5G 요금체계 개선) 5G 요금제 중간 구간 개편('23)에 이어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 추진
-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
-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자율규제 성과 확산

⑫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

- (디지털 안전 체계화) 상시·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 재난 대비 실태점검·모의훈련 강화 및 점검체계 등 마련
- (정보보호 대응체계 고도화)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
- (국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전반적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산업, 인력 등)하고, 자체 보안역량이 부족한 국민·중소기업·지역 대상 보안 사각지대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현지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확대·강화 추진-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
시장 대형 조달사업 및 ODA 사업 수주 강화

2024-0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힘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정보보안 5.6조 원, 물리보안 10.6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3년 평균 15% ↑)를 유지 중임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전년 대비 6.2% 증가, 3년 평균 7.4% ↑),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13%)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음

이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남아·중동 등 신흥보안 시장 공략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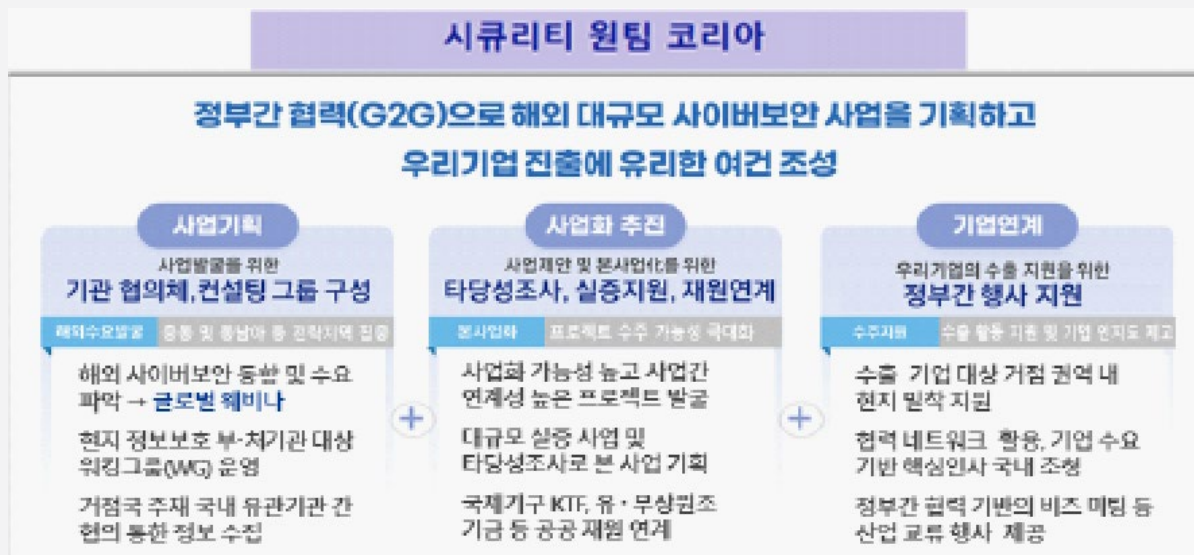
-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동남아)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취지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 AI 등) 개발 및 융합 · 확산 등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중
△ (중동) '사우디 비전 2030' 5대 협력 국가에 한국 포함, 오만, UAE는 정보보호 정책 및 노하우 공유, 민간 협력 등 요청 중

** '22년 기준 정보보호산업 국가별 수출액 비중 1위 미국(41.3%), 2위 중동 · 동남아 등 (27.2%)

-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하여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② 민관 협업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을 통한 간접수출 효과 제고



-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임
-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하여 신흥시장 관련 기금·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KISA는 동남아 · 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MDB)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FS)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대형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③ 신흥시장 대상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정보보호 해외거점 재편

-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의장국 대한민국)를 활용하여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임

- 정부 간 협력(G2G),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임

④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애로 해소형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임

현장 의견

- 기업별로 니즈가 다른데, 정부지원은 용도가 경직되어 있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움
- 현지 문화와 시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보안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력 수급이 어려움
-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국제 인증취득은 필수적인데, 고비용과 긴 시간으로 고통
- 스타트업은 기술력 좋아도 바이어와 만남 자체가 어려움

-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임

사업명	'24년 주요 개선사항
맞춤형 수출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 사(기업당 최대 2,100만원 지원) - 신규사업 : 해외 유명 테크 리포트(가트너 등) 등재 세미나 추진
인니 현지인력양성 (SMTP)	- 규모확대 : 현지 정상급 대학 50인 양성, 우수인력 국내 기업연수 제공 - 협력강화 : 인니 유명 대학교 MoU, 동남아 정부와 인력양성 공동기획 추진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지원확대 : 총 5개사(기업당 최대 7,500만원 지원) - 신규사업 : 해외 시험인증/컨설팅 기관과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대상 해외인증 취득 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
동남아 비즈니스 상담회(온라인)	- 규모확대 : 대상국가 2개국 이상 선정, 바이어 국내 초청규모 확대
시장연계형 초청연수(오프라인)	- 지원규모 : 총 10개사 이상 지원 - 국가확대 : 동남아 외 중동 등 유관 민간 협·단체 및 바이어 추가 초청
전시회 참가 지원	- 대상개편 : 사우디 LEAP '24 등 기업수요에 따른 대상 전시회 개편 - 지원확대 : 총 34개사 지원 - 네트워킹 : 현지 기업과 네트워킹 행사 병행개최로 수출성과 달성 유도
일본 진출 협의체	- 신규사업 : 일본 정보보호 협단체 협업 정보보호 기술 웨비나, 한일 정보보호 기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를 통한 수출 성과 달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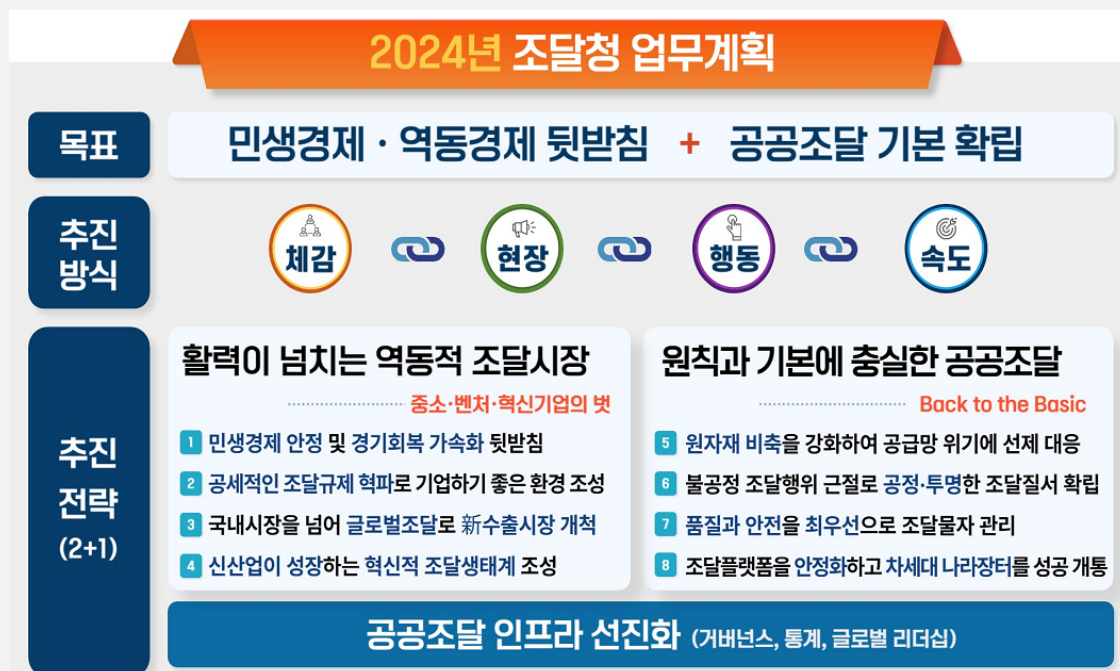
조달청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2024-02-13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 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빛)」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함.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핵심 콘텐츠



- 1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인하(20% 내외)
- 2 조달수수료 감경(1~4월 15% ↓), 종합심사낙찰제 PQ 생략 등을 통해 조달계약 65%(약 39조원) 상반기 집행
- 3 원스톱 공공조달 진입 컨설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 4 제재 유예, 과징금 부담 경감 등 공세적 조달규제 혁파
- 5 규제혁파+α 추적·관리를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설치
- 6 바우처^{10억신설}, 해외실증^{12억원('23년)→50억원('24년)}, ODA를 연계한 해외조달시장 개척
- 7 신성장·재난안전·국민편의·미래전략 산업에 혁신제품 중점 지원
- 8 「新서비스 수요 창출 - 맞춤형 계약 - 플랫폼 정비 - 표준화·평가」를 망라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마련
- 9 비철금속('27년까지 50일분→60일분), 경제안보품목(전년대비 2배 이상) 비축 확대
- 10 「예방·감시 - 선제조사 - 조사·조치」의 공정조달 쉼단계 실효성 제고
- 11 「발주前 - 입찰·계약 - 계약이행」 등 대형 정보화시스템 발주체계 개편
- 12 평가위원 모니터링 + 신고센터 + 이력관리의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
- 13 「안전관리물자 확대지정 - 안전평가 강화 - 엄격한 벌칙」 등 물품·서비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14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화
- 15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 개통('24.下)
- 16 법체계 정비, 조달통계 강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조달 인프라 선진화
- 17 LH 공공주택 계약업무 조달청 이관(공정·품질·속도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음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2024년 FIU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국내 AML제도를 선진화하여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역량 평가* 결과 환류 강화
-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 내규 수립, 내부 감사 등의 기준을 개선*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 (예)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 감사인 선정 기준(독립성, 전문성 등) 신설

** (예) FIU :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업권별 협회 등 : 의심거래 동향 공유 등 협의체 운영

- 검사 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운용
- 감독·검사가 쏠 업권에서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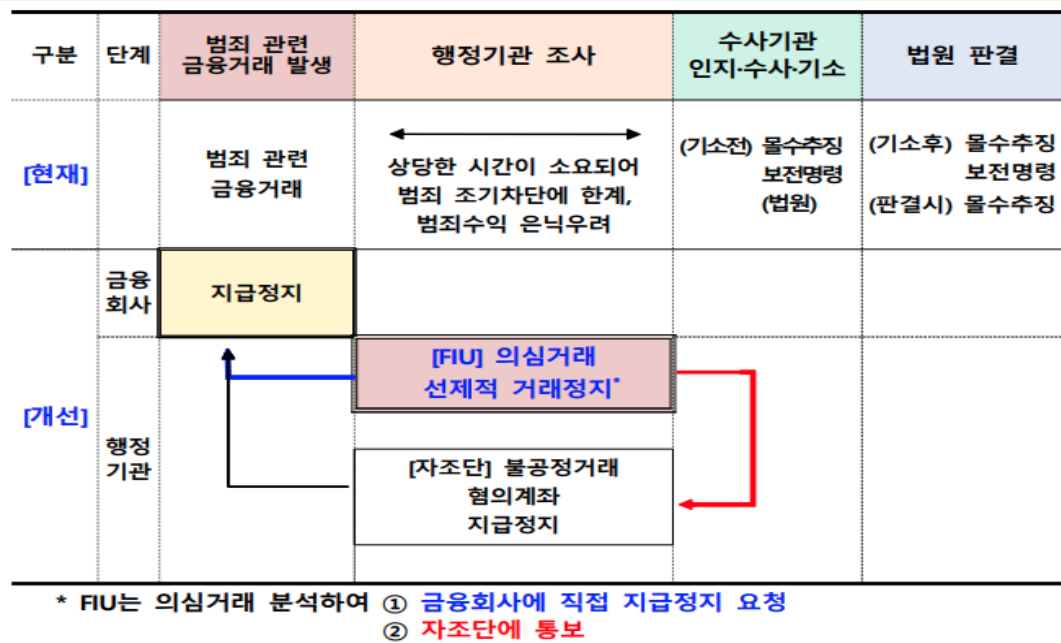
②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 차단
-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
-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운영

③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

- 가상자산 등 신종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악탈 범죄(신종·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활성화 및 충실도 제고
-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실효성 있는 정보 통보
-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국제 범죄에도 적극 대응

<범죄관련 금융거래(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요>



④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 FATF*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법률 개정 검토·추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이 기 시행중 ('22년 기준, 에그몽그룹 보고서)

- 위험도에 따라 AML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규율 체계 마련 추진
- FATF, APG 등 국제기구,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TRAIN을 통한 교육 활성화, 상호평가 전문가 양성 및 평가자 제공 등 국제적인 역할 강화

<정책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1.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 제도이행평가 결과 환류 강화	분야별 평가결과 제공 및 자체 개선 독려 (개선부족시 현장점검)	연중
▶ 금융회사등의 AML 시스템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2월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의심거래 동향 공유	연중
▶ 의심거래 감시 체계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점검 강화	수탁기관 등 점검 및 지도	연중
▶ 감독·검사가 쏠 업권에서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수탁기관 관리강화	수탁기관별 검사·제재 기준 공유 및 피드백	상반기

2.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 시장진입 차단	특금법령 개정	상반기
▶ 사업자의 AML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점검, 실명계정 발급은행 점검, 기존 사업자 수시 검사	연중
▶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운영	신고제도 개선, 갱신신고·심사	사전검토 : '24.상 정식심사 : '24.하

3.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

▶ 범죄사례 유형화 및 금융회사 제공	유관기관 간담회	연중 6회
▶ 금융회사 및 법집행기관 협력·소통 강화로 STR충실도 제고	법 집행기관 협의회	3월
	자금세탁동향 리뷰배포	연중 2회
▶ 신종·민생범죄 전략분석 등 정보분석기능 강화	전담분석 인력 확대·운영	연중
▶ 외국 FIU와의 정보공유 활성화	정보공유 확대	연중

4.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관련 자산동결 범위 확대	공협법 개정	상반기
▶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 검토	연구용역 실시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연중
▶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 포착·예방	先 자발적 협조 後 제도화 검토	연중
▶ TRAIN 교육 프로그램 확대	MOU 개정	상반기
▶ 상호평가 전문가 양성 및 평가자 제공	-	연중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2-13 시행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취소 후 2년 동안 동일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7조제1호, 제12조, 제14조의 2 신설, 제36조제2호,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2-15 시행
-------	-----------------	---------------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급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44조제1항제13호)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
-----	----------------------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의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6조 신설,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등)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이 개정됨

이에 따라, 해당 장치에 대한 조치명령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해야 하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선 건조업 등의 옥내 및 야외도장 시설관리기준 중 관리대상물질 5wt퍼센트 미만 도료를 전체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대비 2022년까지 30퍼센트, 2023년까지 45퍼센트, 2024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던 기준을 2년씩 유예하여 2024년까지 30퍼센트, 2025년까지 45퍼센트, 2026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8, 제82조의10, 제82조의11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66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사실에 관한 보고,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조치 결과·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보고 및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 보고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수선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1조의2제4항제2호,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10 신설, 제11조의11 등)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며,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 신설, 제12조의3 신설, 제34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달빛철도,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2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8조)
- ④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등이 시행하도록 함 (제9조)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⑥ 사업시행자가 특정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08-14 시행예정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의7 신설,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의9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2-16 시행예정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과 절차 및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고, 튜닝검사기간에 대한 연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작 결함 시정 등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기한 연장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를 하는 경우 등에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상점검 등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의무 기한을 10일 더 연장함

② 튜닝검사기간의 연장 (제56조제6항 신설)

-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45일의 범위에서 튜닝검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③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 튜닝용 부품의 인증기준을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튜닝용 부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튜닝용 부품의 제원표, 외관도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튜닝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튜닝용 부품의 인증절차를 정함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56조의5, 제56조의6, 별표 5의3,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 신설)

-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튜닝인증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인증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규제 완화 (제108조, 제108조의2)

- 종전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튜닝의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것을 앞으로는 일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기, 주식소유한도 초과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방법 및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 위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산으로 소멸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을 ‘해산일’에서 ‘청산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일시적 영업인가 요건 미달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및 시기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자산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 관련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② 주식소유한도 초과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명령 방법 (제22조의4제2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주식의 처분을 명하도록 함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요건 (제22조의5 신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더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④ 해산으로 소멸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산일에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산일에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산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⑤ 일시적 영업인가 요건 미달 사유 추가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 자산운용 전문인력 중 1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 및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 신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4 시행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서,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 ② 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 (별지 제2호)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추가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2-17 시행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의 입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고,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물류창고의 시설기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4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48조의3제4항 신설, 제48조의4제2항, 제73조제6호, 제76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2024-05-14 시행예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7조제5항 신설, 제9조제5항 신설, 제9조의2제6항제7항, 제81조제1호의3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2-14 시행예정

(다만,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이 개정규정은 공포안 날로부터 시행)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운영 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3조제6항 신설, 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3 신설, 제32조제1항제1호 등)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비율 요건에 관한 사항을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제14조제1항제2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14 시행예정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7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1조의2 신설, 제101조의3 신설, 제444조제8호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3. ~02.19.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안 제109조제1항)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

②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 (안 제116조제3항·제4항)

- 간이과세 포기신고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이었으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등을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라도 재적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tel:044-215-432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4. ~03.25.
-------	------------------	------------------------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 정지 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위원 추가 (안 제9조의2제4항 라목 및 마목)

-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②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 해제명령 권한 위임 (안 제26조제1항제33호의2)

-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전화: 044-201-4255, 팩스: 044-201-5628)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14.
~03.25.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 (안 제37조의12제1항)
- ②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 (안 제37조의12제3항)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 02-2110-1528, 팩스: 02-2110-0140)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4.02.13.
~03.25.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 (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 ② 책무구조도 관련 사항 (시행령안 제25조의3, 별표 1의2, 규정안 제14조의3)
 -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을 규정
- ③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 (시행령안 제25조의4)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

④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시행령안 제17조의2)

-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tel:02-2100-2824)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4인)

2024-02-15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해당 법률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제95조제4호의2 및 제104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4-02-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2024-02-13 발의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2024-02-13 발의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42조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2024-02-13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3조)
- ②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 ③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신설)
- ④ 악취실태조사·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 (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시	내용
2/19(월) 14:00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안건 처리
2/20(화) 10:00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교섭단체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21(수) 10:00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힘)
2/22(목) 14:00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2/23(금) 14:00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2/24(토) ~ 2/28(수)	상임위 활동
2/29(금)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안건 처리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2/19(월) 11:30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재위	전체회의	2/19(월) 15:00	- 법률안 및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등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9(월) 14:00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19(월) 15:00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9(월) 16:00	세계도덕재무운동의 역사와 미래 비전	이명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2/20(화) 10:00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0(화) 14:00	E&E Forum 제3차 세미나 -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 전략 제안	정우택 · 김희국, 정일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2/20(화) 14:00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양정숙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2/20(화) 19:00	R&D 예산 조정 이후, 국가연구 백년지대계를 논하다	김근태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2/21(수) 14:00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영교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2/21(수) 15:30	발달장애인 지원종사자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2/22(목) 10:00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신현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22(목) 14:00	국지화되는 자연재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민형배 ·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2/22(목) 14:00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달곤 · 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2/20(화) 15:00	2024년도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AI와 공교육	국회도서관	국가전략 정보센터
	2/21(수)	「World&Law」 제2024-4호 발간 - 아빠도 출산휴가 맘 놓고 쓰려면?		
		「금주의 서평」 제666호(2024-7호) 발간 - 도서명 : 인구 위기 - 저자 : 알바 뮌르달, 군나르 뮌르달		
	2/22(목)	「현안, 외국에선?」 제76호(2024-4호) 발간 - 대만 민진당 재집권과 동아시아 정세 변동	국회예산정책처	
	2/23(금)	「NABO 경제 동향」 2024년 2월호 발간		
	2/23(금)	기획연구보고서 발간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13(화) 14:00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15(목) 14:00	2024 한-아세안 포럼 제67차 국제심포지움 - 한국의 이민정책과 對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이명수 의원실, 한아세안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2/15(목)	「예산춘추」 통권 제7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13(화)	「이슈와논점」 제2194호 발간 -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국회입법조사처	
	2/13(화)	「NARS 브리프」 제32호 발간 -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2.13~02.1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14(수)	지적재산권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14(수)	ESG	2024년 PRI 동향과 책임투자 전망
2/15(목)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1. 일본의 기업 밸류업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